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목적

1. 이 장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더 나아가, 이 장은 양 당사국의 축산업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동물 복지 문제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5.3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1의 제1항에 정의된 조치를 말한다.

제5.4조 권리 및 의무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당사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5.5조
투명성 및 정보교환

양 당사국은

- 가. 무역에 적용 가능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하여 투명성을 추구한다.
- 나. 각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그 적용에 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한다.
- 다.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한다. 그리고
- 라.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요건을 전달한다.

제5.6조
국제기준

양 당사국은

- 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국제기준의 적용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그리고
- 나. 국제기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에 협력한다.

제5.7조
수입요건

- 1. 당사국의 일반적인 수입요건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전체에 적용된다.

2. 추가적인 특정 수입요건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이하 “세계동물보건기구”라 한다)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이하 “국제식물보호협약”이라 한다)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하여 내린 결정에 근거하여 수출 당사국 또는 그 일부에 부과될 수 있다.

제5.8조

동물 및 식물 위생과 연관된 조치

1.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기준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고,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를 고려하여 그러한 지역의 인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한다.

2.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양 당사국은 지리적 위치,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그리고 그러한 지역에서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관리의 효과성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3. 양 당사국은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의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따르는 절차에 관한 신뢰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러한 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력을 구축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약 2년 이내에 이러한 신뢰구축 활동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신뢰구축 협력의 성공적인 완료는 제5.10조에 언급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에 의해 확인된다.

4. 그러한 지역을 결정할 때,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 또는 그 일부의 동물 또는 식물 위생상황에 관한 자국의 결정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 기준에 따라 수출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원칙적으로 근거하도록 하고, 수출 당사국이 내린 결정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협의를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수출 당사국은 그러한 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임을, 그리고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으로 유지될 것임을 수입 당사국에게 각각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를 위하여 수입 당사국에게 합리적인 접근이 부여된다.

제5.9조

동물 복지에 관한 협력

양 당사국은

- 가. 동물 복지 분야에서 정보, 전문지식 및 경험을 교환하고, 그러한 활동을 위한 작업 계획을 채택한다. 그리고
- 나. 국제포럼에서 동물 복지 기준, 특히 동물의 기절 및 도축에 관한 기준의 개발에 협력한다.

제5.10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또는 약정의 개발
- 나. 이 장의 이행 진전 상황의 점검
- 다. 제5.8조제3항에 언급된 신뢰구축 활동의 성공적 완료의 확인
- 라. 동물 유래 생산품 작업장과 적절한 경우 식물 유래 생산품 생산 장소의 승인을 위한 절차의 개발, 그리고
- 마. 상호 수용 가능한 대안에 도달하기 위해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포럼의 제공. 이와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사안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소집된다.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고, 상호 합의한 일자에 1년에 한 번 회합한다. 회의 장소 또한 상호 합의된다. 의제는 회의 전에 합의된다. 의장은 양 당사국 간 교대로 한다.

제5.11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